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번호	도민 442-745	(전화번호 445-8905)	전결 규정 조항 인원 사항
처리기간	83. 7.	구형 간	
시정일자	83. 7.		
보연한	10년		
보조 원 조 원	도민정비구단	83. 7. 26 고사제 388호	
	도민정비과장		
	도민정비계장		
안배원자	윤영우	손만수	
유선 조	각 안 함 조	발신 신	기통 계
제부	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 변경인가 (사업기간연기) (제 1 안)		
수신 대부 결재	수신 : 대부 결재		
제목	도민정비구단 구내 제 310호 (83. 6. 1)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인가된 구내 화양동 117-5호 ~ 111-124호에 대하여 증가구간내 리프트 설치에 관한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치 기간 연기 요청에 있어 이를 도민계획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 변경인가하리 이를 별안과 같이 오시군청 합니다		
	(제 2 안)		
	요 의 안		
	도민정비구단 고사제 388호		
제목	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 변경인가 (사업기간연기)		

이제까지 도민정비구단 구내 제 310호 (83. 6. 1)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인가된 구내 화양동 117-5호 ~ 111-124호에 대하여 증가구간내 리프트 설치에 관한 도민계획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 변경인가하리 이를 별안과 같이 오시군청 합니다


도민정비구단 구내 제 310호 (83. 6. 1)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인가된 구내 화양동 117-5호 ~ 111-124호에 대하여 증가구간내 리프트 설치에 관한 도민계획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 변경인가하리 이를 별안과 같이 오시군청 합니다

도민정비구단 구내 제 310호 (83. 6. 1)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인가된 구내 화양동 117-5호 ~ 111-124호에 대하여 증가구간내 리프트 설치에 관한 도민계획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계획사업 (도민) 설비계획 변경인가하리 이를 별안과 같이 오시군청 합니다

1. 시설특별법 제 21조 제 3호 (83.6.16) 조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설치계획인가의 심등구 화양동 119-5호 ~ 111-124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2조 제 2항 및 특별시행령 제 6조 제 1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설치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시를 심등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속하고 토지소유자 및 의회 관계인에게 알린다.

1981. 7.

시설특별법  관

1) 사업의 시책처: 심등구 화양동 119-5호 ~ 111-124호

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
화수도 포갈공사

3) 사업의 규모 : 노폭 8.14 연간 300M

아스팔트포장 20.49

화수도공사 (출판  $D=600\text{mm}$   $L=300\text{mm}$ )

4) 사업의 평가 구분명칭: 심등구 화양동 220-14M

심등구청길 이 될 중

5) 사업의 관수 및 준공예정일

발초 관수: 83.6

준공: 83.7.20

비정 관수: 결정없음

준공: 83.12.31

6)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면적, 소유권 이외의

권리명세서: 생략

7) 트리 또는 건물에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 이

관계인의 주소성명: 생략

8) 기타: 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등구청 도시계획과 (445-8905)로 문의함

(제 3 안)

수신 : 토목과장

발신 : 과장

제목 : 등 건

1. 토목 416-5마 (83. 7. 18) 조와 관련임.

2. 상기 대포크 운행의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

이하는 별첨 고시본 사본과 같이 사업기간 연기 계획하리

등기간내에 용사완료하여 도시계획사업 (도로)을 준공처리토록  
안건을 이하더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고시본 사본 1부

2. 인가증 1부

3. 인가증인 1부 등.

(제 4 안)

수신 : 수신처장

발신 : 과장 (구형장)

제목 : 등 건.

1. 상기 (구)안내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불 별첨  
고시본 사본과 같이 변경인가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본 사본 각 1부 등.

수신처 : 건설부 장관 (도시계획과장), 서울특별시청 (시설계획과장)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장

제목 : 과(시)보 게재 의뢰

발신 : 과장 (구형장)

1. 다음 사항을 과(시)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과(시)보 게재 구분 : 고시

과 관(세)보정명 : 드나계획사업 (드) 일시계획 변경인가

라. 법령근거 : 드나계획법 제14조 제1항

캠 부 : 고시문 사본 2부 붙.

수신처 : 총무처장관 (법무감찰관) , 시물류별시청 (승보관)

(제 6 안)

수신 : 시물류별시청

참 조 : 시 인 라 장

제 목 : 시관 직인 각인 의뢰

1. 다음사항을 직인발인 의뢰 하오시 발인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가. 총무처 관보게대응 1건

나. 건설부 장관보고응 1건

다. 인 가 증 1건

캠 부 : 고시문 사본 1부 붙.

(제 7 안)

수신 : 수신회함로

발신 : 과 관

제 목 : 등 관

2. 당구 관에 화양등 119-5호 ~ 111-124호에 대하여

드나계획사업(드) 일시계획<sup>변경</sup>인가 하오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

바랍니다.

캠 부 : 고시문 사본 1부 붙.

수신처 : 총무과, 기획감사과, 세무1.2과, 시면분사청, 건축과, 구청과

수도물사과, 경찰관리과, 중원목리과(합)

이 가 증

1. 사업의 행기 : 성동구 화양동 119-5호 ~ 111-124호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
차수로 포장공사

3. 사업의 규모 : 폭 8m 연장 300m

아스팔트포장 20.4a

차수로 공사 (용관 17=600mm L:300m)

4. 사업의 행라 주소상명 : ~~성동구~~ 청양 이 월 중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착수 83. 6. 6.

준공 83. 12. 31

6. 인가번호 : 서울시 고시 제 호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주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

영세권 : 별첨생략

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도시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

의한 관계인의 주소상명 : 별첨생략

위의 같이 별첨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

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(도로) 실시계획

변경인가함.

1983. 7.

서울특별시장

## 허 가 조 건

=====

1. 본 사업은 사업 신청서의 설계도서 및 일반 포복 시행서에 의거 시행  
이되 다음 조건을 특히 준수함은 물론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절차나 명  
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2. 본 사업의 공사 착공시에는 공사 감독청인 관할 구청에 착공 계획을 제출  
하여야 하며, 준공시에는 준공 계획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 
한다.
3. 공사 집행에 있어 토사 유출, 낙반등 ~~발생~~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 
착수전에 미리 방지책을 하여야 하며, 본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 
제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 
한다.
4. 본 지역에 임목 벌채허가, 시방 지적지 해제 및 발매 허가등을 요할 시  
에는 별도 허가를 득한후 착공할 수 있고,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
이 있을시에는 이를 득하여야 한다.
5. ~~건축물, 건축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후 건축 시공토록 하여야  
한다.~~
6. 본 사업 집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도 별도로 지적법 제 20조 규정  
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, 준공 검사시에는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 
받고 지적협회에서 측량한 경계 감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.
7.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하수유입.  
유출로 인하여 사유 재산에 피해가 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  
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동 부지 주민의 하수  
배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역 일원의 단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 
야 한다.

8. 하수도 구조물은 당시 하수 표준도에 되기 시공하여야 하며, **기상부 관**도 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9. 절개지에는 때불림 및 식수 능력 단장하여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.
10. 본 국사는 건설업 면허 소지자라야 한다.  
(국사 시공 감독의 토목 건설업 면허증 사본 및 사진, 이력서, 주민등록 초본을 착공 개와 동시 제출하여야 함)
11. 이 국사는 주도에 중단 또는 미시공하거나 변경 시공하는 등 **적당한** 이유없이 국사 기간의 연장, 기타 허가조항과 행정 지시에 불응할시는 관계업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12. 이 허가조건과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.
13. 사업시행자는 본 국사의 감독자를 지정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착오없이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 변경등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주 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14. 위 조건은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것이며, 도시계획법 제 78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동시 당시의 지시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끝.

